

# 금융결제원CMS 이용계약서

하나은행(이하 '은행'이라 한다)과 \_\_\_\_\_(이하 '회사'라 한다)는 금융결제원CMS(이하 'CMS'라 한다) 이용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## 제1조(목적)

이 계약은 회사가 CMS를 이용함에 있어 은행과 회사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전제조건)

이 계약은 회사가 금융결제원의 CMS 이용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며, 그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취소된다.

## 제3조(이용계좌)

① 회사는 CMS 업무처리에 필요한 계좌(이하 '계좌'라 한다)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구분	계좌번호	예금주명	비고
출금이체			다수 납부자계좌에서 출금
입금이체			다수 수취인계좌로 입금

②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회사는 이 계약을 변경 체결하고 금융결제원의 계좌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제4조(고객수수료)

① 회사가 CMS 이용의 대가로 은행에게 지급하는 고객수수료는 다음과 같다.

구분		고객수수료	입금(출금)대행비용		이용여부(O,X)
		이체건당	의뢰건당	이체건당	
출금이체	익일	160원	20원	120원	
	당일	200원	40원	260원	
입금이체		100원	-	100원	

② 회사는 계좌를 통하여 고객수수료를 자동 지급한다. 은행은 출금이체의 경우 이체금액을 계좌에 입금할 때 고객수수료를 차감하여 입금하고, 입금이체의 경우 이체금액을 계좌에서 출금할 때 고객수수료를 포함하여 출금한다.

③ 은행은 출금이체금액이 고객수수료보다 적을 경우 별도의 예금청구서 없이 계좌에서 해당 수수료를 인출한다.

④ 고객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은행은 변경개시일 1개월 전까지 회사에게 통지해야 하고 회사가 변경개시일 2주일 전까지 은행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.

## 제5조(계약기간)

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하며, 기간만료일 1개월 전까지 은행 또는 회사가 서면에 의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며,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다.



**제6조(계약해지)**

- ① 금융결제원이 회사의 CMS이용승인을 해지한 경우,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
- ② 은행은 회사가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3개월 이상 고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,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은행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**제7조(관련규정)**

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CMS 이용약관 및 관련규정을 따른다.

**제8조(관할법원)**

이 계약에 관한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계 약 일 : 20     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은 행 : 하나은행 \_\_\_\_\_ 지점      지점장      (인)

계약지점코드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회 사 : \_\_\_\_\_      대표자      (인)

사업자등록번호				-			-				
---------	--	--	--	---	--	--	---	--	--	--	--

